

< 주요 변경 대비표 >

1. 변경대상 투자신탁 및 변경 문건:

No.	펀드명	구분	신탁계약서	투자설명서	간이설명서
1	슈로더이머징위너스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 A(주식혼합)	자펀드	○	○	○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7년 3월 9일(목)

3. 주요 변경사항:

[1] 신탁계약서

- 환매수수료 일괄 면제 적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7조 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</u>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	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관련세금</u>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
제41조 (환매수수료)	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종류 C1~C5, F, I, S, V(변액보험), W 수익증권 -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2. 종류 A, C-P, C-CP(퇴직연금) 수익증권 - 없음	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제43조 (신탁계약의 변경)	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
제45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③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④, ⑤항 (내용 생략)	③ 삭제 ③, ④항 (조항 변경, 내용은 현행과 동일)
부칙	신설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2] 투자설명서

- 환매수수료 일괄 면제 적용
-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문구 수정 등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8. 가. (2)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	<p>2) 채권 및 현금 40%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</p> <p>가. 채권은 전세계 이머징 마켓의 정부, 정부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중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및 글로벌 채권에 투자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2) 채권 및 현금 40% 이하 <u>채권: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</u></p> <p>가. 채권은 전세계 이머징 마켓의 정부, 정부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중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및 글로벌 채권에 투자한다.</p> <p><u>현금: 신탁계약서제 17 조제 2 항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한다.</u></p> <p>- <u>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단기대출(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)</u> <u>2. 금융기관에의 예치(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)</u> <u>3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u>
제2부. 8. 가. (2)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(계속)	<p><u>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40% 이하</u> <u>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단기대출(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)</u> <u>2. 금융기관에의 예치(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)</u> <u>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u> 	<p><삭제 ></p>
제2부. 8. 가. (2)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(계속)	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) 내지 5) 및 11) 내지 12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p>	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) 내지 5) 및 11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p>

	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~4. <생략>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)내지 5) 및 11) 내지 12)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	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~4. <생략>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)내지 5) 및 11)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제2부. 9. 가. (1) 운용전략	주요 운용전략 <생략> 정상적인 시장환경하에서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게 되며, 주식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거나, 주식의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 등으로 채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주식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,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이머징마켓 채권 중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, 주식 시장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글로벌 채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- 거시경제의 분석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, 채권, 현금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 신설	주요 운용전략 <생략> 정상적인 시장환경하에서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게 되며, 주식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거나, 주식의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 등으로 채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주식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,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이머징마켓 채권 중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, 주식 시장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글로벌 채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- 거시경제의 분석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, 채권, 현금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, 방어적 목적으로 현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필요에 따라서 채권을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.
제2부. 11. 나. (3) 환매수수료 13.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, 환매수수료	종류 A, C-P, C-CP(퇴직연금) 수익증권 - 없음 종류 C1, C2, C3, C4, C5, I, F, V(변액보험), W, S 수익증권 -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없음

[3] 간이투자설명서

- 환매수수료 일괄 면제적용 등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, 환매수수료	종류 A 수익증권 - 없음 종류 C1, S 수익증권 -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없음
II. 2. (2) 세부 운용전략(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)	<생략> 정상적인 시장환경하에서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게 되며, 주식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거나, 주식의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 등으로 채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주식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,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이머징마켓 채권 중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, 주식 시장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글로벌 채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- 거시경제의 분석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, 채권, 현금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	<생략> 정상적인 시장환경하에서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게 되며, 주식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거나, 주식의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 등으로 채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주식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,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이머징마켓 채권 중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, 주식 시장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글로벌 채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- 거시경제의 분석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, 채권, 현금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<u>신설</u>	<u>주식에 주로 투자하며, 방어적 목적으로 현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필요에 따라서 채권을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.</u>